

(재)한국학호남진흥원 규정 신규 대조표

2019.03.22.

규정	현행	개정	비고
20. 인사규정			
제 25 조(시보 임용)	① 임용권자는 <u>직원</u> 신규임용시 직무능력 검증과 향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1년의 범위 내에서 <u>기간을 정하여</u>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	① 임용권자는 <u>정규직</u> 직원 신규임용시 직무능력 검증과 향상을 위하여 <u>6개월의 기간을</u>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	
21. 직원평정규정			
제11조(업무역량 평가)	② 확인자는 <u>부원장</u> 이 되며, 일반직 부서장과 연구직의 평가자는 <u>부원장</u> 이 되고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.	② 확인자는 <u>사무국장</u> 이 되며, 일반직 부서장과 연구직의 평가자는 <u>사무국장</u> 이 되고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.	
제13조(근무성적 평가 분포 비율) 단, 연봉제 적용 직원이 아닌 경우 D 등급이 없으면 C 등급에 산정한다. (삭제)	
22 비정규직인사규정			
제9조(비정규직 관리부서)	③ 예산 관리부서인 <u>기획연구부</u> 를 그 관리부서로 한다.	③ (삭제)	
25. 직원보수규정			
제4조(봉급)		⑤ 연구직 초임획정에 따른 경력산정은 '공무원 보수규정'을 준용한 [별표4]와 같다.(신설)	

규정	현행	개정	비고
[별표4]	연구직의 경력 환산율표(법 제7조 관련) 6. 대학(전문대학)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 - 100%	연구직의 경력 환산율표 (수정) 6. 대학(전문대학)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 - 50%(수정) 9. 「병역법」에 의한 군의무복무경력 - 100%(신설)	
[별표 5]	부양가족신고서	부양가족신고서(삭제) - 직원수당규정으로 이동	
26. 직원수당규정			
제16조(교통보조비)	제16조(교통보조비)	(삭제)	
제18조(가계지원비)	제18조(가계지원비)	(삭제)	
[별표1]		부양가족신고서(신설)	
28. 직원연봉규정			
제19조(연봉심의위원회)	④ 위원장은 <u>부원장</u> 이 되며 ……	④ 위원장은 <u>사무국장</u> 이 되며 ……	
29. 자산 및 물품관리규정			
제27조(사용료의 면제)	1. 원장, <u>부원장</u> 이 사용하는 경우	1. 원장, <u>사무국장</u> 이 사용하는 경우	
제31조(차량배정 원칙)	1. <u>전용</u> 승용차는 원장, 부원장에게 배정한다.	1. <u>공용</u> 승용차는 원장, 사무국장 및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원에게 배정한다.	